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5월 09일

홍은제2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숙	이 *숙 1963-06-05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길 (홍은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4-29